

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추가공고

사업개요						
○ 사 업 명 :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○ 사업목적 :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○ 사업기간(협약기간) : 협약 체결일 ~ 2027. 04. 30.						
지원내용						
○ 지원내용						
번호	구분	내용				
1	지원대상	○ 방송영상독립제작사(국내 법인·개인사업자) ○ 방송영상독립제작사-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* 주관기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(독립제작사신고필증제출 필수)이며, CG/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작업 기업만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※ 중소/중견/대기업 참여 가능하나,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※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·방영하는 경우(바이아웃(Buyout), 올라이트 판매(All rights sales) 등)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,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 (단, 국내 동시공개/방영은 가능) ※ 영화,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				
2	지원부문 및 규모	<table><tr><th>드라마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과제당 최대 7.5억 원, 1편 내외 지원</td><td></td></tr></table>	드라마	비고	과제당 최대 7.5억 원, 1편 내외 지원	
드라마	비고					
과제당 최대 7.5억 원, 1편 내외 지원						
3	협약 기간	협약 체결일 ~ 2027.04.30.				
4	지원내용	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- CG, VFX, 뷰티, DI, 고난이도 에셋 제작, 디지털휴먼, 버추얼 스튜디오, 타이틀 제작 등 - 사운드 디자인, 사운드 믹싱, 음원 구매,교체, 제작 등 - 편집실(장비포함) 임차, 편집기사, VFX 슈퍼바이저,코디네이터 인건비, CG/VFX 작업자 인건비 등				
5	사업결과물	○ 완성작 전편 <table><tr><th>드라마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최소 300분 이상</td><td></td></tr></table>	드라마	비고	최소 300분 이상	
드라마	비고					
최소 300분 이상						
7	사업자 부담금 비율	○ 기업규모별 자부담 비율 차등 * 대기업 및 중견기업 : 총사업비(국고보조금+자부담금)의 20% 이상(현금) * 중소기업 : 총사업비(국고보조금+자부담금)의 10% 이상(현금) * 컨소시엄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자부담금이 높은 기준을 적용 *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 제작비 불인정				
○ 지원조건						
번호	구분	내용				
1	제작 진행률	○ 기획개발 단계는 공모신청 불가로 촬영 확정된 작품만 지원 가능 ○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				
2	참여인력 인건비	○ 총 사업비(국고지원금+사업자부담금)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*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,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○ 국고지원금 내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(회사대표/과제책임자 인건비는 편성 불가) * 4대 보험료,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(업체부담금 제외) ○ 사업자부담금 내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, 회사대표,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(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는 편성 불가)				
3	표준계약서	○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, 법정 근로시간				

번호	구분	내용
	의무사용 및 최저임금, 근로시간 준수	준수 의무(제작사 - 스태프, 하도급사 - 스태프 등) - 조연출,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- 진흥원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점검 진행 - 사용점검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, '부적정'은 시정요구(불수용 시 결과평가 탈락) 【최저임금 준수 가이드】 • 스태프 계약서에 제작 기간, 예상 근로 시간, 임금(급여) 명시 • 임금(급여)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총임금(급여)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(10,320원/시간당) 이상이어야 함 * 최저임금 기준이 변경되면,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필수 • 실제 근로 시간은 제작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, 총임금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는 '실제 근로 시간 x 최저임금'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※ 수당(주휴 및 연장근로)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
4	인권보호 및 안전관리	○ (교육이수) 결과평가지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 ○ (안전관리)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* 촬영 진행 시,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(사업비 편성 가능) * 항공 촬영, 수상 촬영, 추격·폭발 장면 촬영, 오지 촬영 등 * 특히 해외 촬영은 보험 가입 필수
5	상용화 및 성과관리	○ TV 방송, OTT 플랫폼을 통한 방영 및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○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지원과제에 대해 상용화 여부, 실적 등 성과관리(매출액, 시청률, 조회수 등)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
6	채불 관리	○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(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)에 따라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채불해서는 안됨 ○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채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채불 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
7	사업관리	○ 선정된 기업은 영상/기술관련 전문 과제관리(중간점검, 현장실사)에 대한 성실 대응 의무
8	신청 및 선정가능 작품 수	○ 주관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○ 참여기관은 중복신청 가능하며 본 사업에 한하여 '당해연도 동시수행 과제 2개 이내 제한'을 적용하지 않음 * 다만, 우리 원 다른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 과제에 포함
9	지원제외 사항	○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·방영하는 경우(바이아웃(Buyout), 올라이트 판매(All rights sales) 등)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,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
신청서 접수기간		○ 공고기간 : 2026. 10. 13.(화) - 2026.10.29.(목) ○ 접수기간 : 2026. 10. 19.(월) - 2026.10.29.(목) 14:00까지 ※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.
신청방법		○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(KOCCA 홈페이지,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) -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※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※ e나라도움 신청시 '사업명'은 KOCCA 지원사업명이 아닌, '작품명'을 의미하며, '작품명'에는 특수문자 사용 불가 ○ 제출서류 목록 ※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※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

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,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·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구분	제출서류		비고
신청서 접수 시	공 통	사업신청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	
		① 분야별 작품 내용(기획안)	대본/구성안 별첨
		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	
		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		④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	
		⑤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	
		⑥ 방송 스태프/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	
		⑦ 사업자등록증 사본(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)	
	⑧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	주관기관 필수	
	별 첨	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*엑셀 파일(확장자 .xls) 제출 필수, 확장자 변환(PDF, numbers 등) 금지	엑셀 파일
② (드라마) 대본 4부		제출 필수	
③ (해당 시)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		해당 시 필수제출	
서면평가 통과 시	① 참고 영상(발표자료, 일부 촬영본, 트레일러, 레퍼런스 등) / 선택 사항		별도 안내
	②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(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)		
	③ (해당 시) 중소기업확인서		해당 시 필수제출

【신청서 제출 시 유의 사항】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외 신청서 내 모든 직인, 서명 생략 (※ 단, 협약체결시 제출서류에는 必)

제출서류	직인/서명 여부	
	기존	변경
사업신청서(표지)	O	직인, 서명 생략
사업계획서(내지)	X	X
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	O	직인, 서명 생략
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	X	X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O	서명 필수

- 제출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, 1개의 압축파일(파일명 : **주관기관명_과제명.zip**)로 **e나라도움에 제출**
- 맥에서 작업한 경우 윈도우OS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압축 해제 및 정상 실행여부 사전 확인 필수**
-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: 50MB ※ 첨부파일 50MB 이상 시, 업로드 불가**
-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【제출 예시】

【폴더트리】	
압축폴더	폴더 내 파일명
[장르]주관기관명_작품명.ZIP (50MB 이하) <i>ex)[드라마]ABC제작사_작품명</i> * 작품명 특수문자 포함 불가	1.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주관기관명.hwp 2.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.xls 3. (드라마) 대본 4부 4. (해당 시) 원작(수상작)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_주관기관명 5. (해당 시)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_주관기관명

【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】

- **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** : 음반제작사, 연예매니지먼트업, 연예인 대리, 매니저업, 엔터테인먼트, 모델에이전시, 캐스팅디렉터, 공연알선 등
- **등록의무자** :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**등록증 절차 방법** :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
- **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처** : ☎ 1588-2594

【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】

-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: [바로가기](#)
- 문의 :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
(☎ (044)203-3247 팩스: (044)203-3465/ 메일: progoose5@korea.kr)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- **선정절차 안내** : 1차 서면평가 → 2차 발표평가 →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→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→ 협약체결
 - **(1차 서면평가)**
 - 평가방법 :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
 - 평가점수 :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
 - 1차 평가 통과 기준 : **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3배수 내외** → 발표평가 대상 선정
 - **(2차 발표평가)**
 - 평가방법 :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
 - 평가점수 :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
 - 2차 평가 통과 기준 : **70점 이상** → 종합심의 대상 선정
 - **(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)**
 -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 - 종합점수 : 1차 서면평가(40%) + 2차 발표평가(60%)
 -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,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
 -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,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 내용 제시
 - ※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 가능
 -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, 후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
- ※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
- ※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평가기준

- [1차 서면평가]
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용	배점
수행기관 (20점)	기관전문성·실적	유사 과제 수행 경험, 조직 역량	10
	관리 체계성	조직 구성, 관리 완성성·체계성	10
참여인력 (20점)	인력 구성	적정 인력(정규·비정규·용역) 구성 및 배치	5
	참여율	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 기간 적정성	5
	전문성	유사 과제 경력 및 포트폴리오	10
기획력 (40점)	독창성	기획의 차별성·창의성·신선도	10
	작품성 및 완성도	기획의 완성도·예술성·일관성	10
	경쟁력	비교 우위 요소(IP, 기술, 파트너십 등) 보유 및 활용 가능성	10
	대중성	대중 공감 가능성, 파급력·수용성	10
사업비 (20점)	사업비 규모	사업비(국고·자부담) 규모 적정성	5
	편성 내역	세목별 산출 근거 및 적합성·합리성	10
	자부담금 조달계획	조달 계획의 구체성·현실성	5
계			100

- [2차 발표평가]
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용	배점
수행기관 (20점)	추진이지	과제책임자의 수행 의지·충실도	10
	관리 체계성	조직 구성, 관리 안정성·체계성	5
	기관 전문성·실적	유사 과제 수행 경험, 조직 역량	5
기획력 (30점)	대중성	대중 공감 가능성, 파급력·수용성	15
	경쟁력	비교 우위 요소(IP, 기술, 파트너십 등) 보유 및 활용 가능성	15
기대성과 (40점)	성과 목표	성과 목표의 구체성, 측정 및 달성 가능성	10
	시장성	예상 수요 및 매출·수출 규모	10
	사회적 파급 효과	사회·문화적 가치 및 영향력	10
	투자·유치 가능성	기대 투자·유치 목표 및 준비 정도	10
ESG(10)	일자리 창출 ¹⁾	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	2
	지역기업 ²⁾	지역 소재 기업 여부(본사 기준)	1
	공정상생 ³⁾	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,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점	2
	윤리·인권 ⁴⁾	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	2
	표준계약서 활용실적 ⁵⁾	202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(제출 : 3점, 미제출 0점)	3
합계			100

【ESG 배점기준】

- 1) 제작계획서 내 ‘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’을 포함하여 **제출 2점, 미제출 0점**(수행업무, 고용형태, 기간, 참여율, 인원 등)
- 2) 본사 지역 소재 기업 **1점**,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소재 기업 **0점**
- 3)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**제출 2점, 미제출 0점**
- 4) 방송 스태프/출연자 인권보호 서약서 **제출 2점, 미제출 0점**
- 5) 표준계약서 활용실적(2025년) : **제출 3점, 미제출 0점**

지원금 지급

○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
- (1차 지원금)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% 지급(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)
- (2차 지원금)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(총지원금의 30%) 지급(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)

○ 사업추진 일정

번호	구분	내용
1	협약체결(11월 중)	○ 선정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체결
2	중간점검('27년 02월 중)	○ 예산집행, 과제수행 적정성 등 점검 후 통과 기관 대상 2차 지원금 지급
3	협약종료 1개월 전(2027.3.30.)	○ 협약변경 신청사항(승인/통보) 신청 마감 및 이후 제출 불가, 정산시 불인정
4	협약종료(2027.04.30.)	○ e나라도움 예산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(영상) 완성
5	결과물 접수(2027.05.10.)	○ 결과물 및 결과 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
6	결과평가(2027.05.)	○ 결과보고서,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

○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

- 총협약사업비(국고지원금+사업자부담금)의 10~20% 이상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및 현금 편성 필수
- * 중소기업 10%, 중견·대기업 20%
- * 컨소시엄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자부담금이 높은 기준을 적용
- 총사업비(지원금+자기부담금)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, 협약체결 전 집행분 소급 적용 불가
-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

【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】

-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
-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지원요건

-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※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'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'를 통해 확인하며,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

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.

1.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진흥원)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(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. 단,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)
2. 동일한 사업계획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(간접보조금 포함)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
3.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
4.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5.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,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6. 방송법 제 2조 3항의 방송사업자
 - * 단,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계열관계의 제작사는 신청 가능, 중소/중견/대기업 참여 가능
 - *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후반작업 사는 본 사업에 한하여 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

문의처

- 사업담당자 연락처
 - 방송영상전략팀 고대영 차장(✉ dyko@kocca.kr / ☎ 061-900-6334)
 - 제작지원 통합 안내 페이지(접속 [URL](#))
- e나라도움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(☎1670-9595)
 - 사용자 매뉴얼(접속 [URL](#)) / 동영상 자료(접속 [URL](#))

콘텐츠금융제도

-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투·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*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 - *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kocca.kr>) > 알림마당 > 금융지원
 - [참고]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.
 -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(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)
- *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
: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
(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)
- 콘텐츠금융제도(투자·용자 유치 지원) 문의
 - 콘텐츠가치평가센터(☎ 02-6441-3658, assess@kocca.kr)
- ※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

기타사항

-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,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했을 경우,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,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
-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,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
-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**20일**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,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 제6조)
 - 1.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, 2. 사업비의 관리, 집행 및 정산, 3.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, 정보공시, 감사보고서 제출,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, 4.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5조 및 제15조의2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·관리하여야 함
-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(PC 등)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(통장사본 등)을 제출하여야 함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 제37조)
-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 제37조, 제42조)
- 선정 이후 협약서 '성과관리' 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
 - *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
- (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 포함 시)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. 실적은 표준계약서로 증빙하며,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
- (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)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 - *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
-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,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관련: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 제50조)
-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(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-5678)
 -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 - *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는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,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(단,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,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)
 - *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,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,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(단,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)